

「건설법」 제 62조 4항 동법 시행령 100조의 1,2항 개정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1. 문제점

(1) 「건설기술진흥법(이하‘건설법’)」에 의한 실적관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 공사 완료 후에 정기안전점검 종합보고서와 초기점검보고서를 시공사로부터 받도록 되어 있으나 체계적으로 받지 않고 일부 초기점검도 ‘건설안전 점검기관(이하 ‘점검기관’)'에서 입력한 경우만 ‘실적확인서’자료를 보유하고 있음.

- 이 자료도 발주자의 확인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인정을 안해주어 발주자의 실적 인정에 무용지물임.

(2) 현재 안전용역 시장은 크게 시설물 안전진단과 건설공사 안전점검을 하는 업체로 분류되며 국토교통부(이하‘국토부’)의 ‘입찰자격사전심사기준(PQ)’에 따라야 하나 이를 평가할 실적관리 기준·설정과 실적관리가 없으면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며, 행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시설물 안전법’)상의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적을 인정하겠다고 하면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음.

(3) 시공사가 발주자에게 요청을 하면 발주자가 인터넷 모집 → 관리 → 무작위 선정을 한다고 하는데 1억원 이상의 안전점검 용역을 국토부의 ‘입찰자격사전심사기준(PQ)’에 맞추어 무슨 방법으로 무작위로 한다는 것인지,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음.

(4) 이미 20여 년간 건설공사 안전점검 실적이 있는 상태에서 시설물 안전진단 실적을 건설공사 안전점검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음.

(5) 민간공사나 턴키(Turn-key) 발주시 시공사가 안전점검비를 과도하게 적은 비용으로 반영하는 경우 등 건설공사 도급계약상 대가가 제대로 반영이 안되었을 경우의 견제장치가 없음.

예) 1,000억원 공사에 대가기준에 의한 안전점검비가 5억원이나 1,000원을

반영하는 경우도 있었음.

(6) 「건진법」 제 62조에 따르면 안전점검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서’는 시공자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작성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급계약 내의 계약내역의 집행은 계약자인 시공사 권한과 책임인데 발주자에 의한 점검업체 지정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음.

(7) 발주자가 점검업체를 지정할 시 발주자에게 부실점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8) 발주자에게 권한만 주고 책임을 묻지 않을 경우나 책임기술자 면접이나 제안발표로 선정할 경우 발주자의 업체선정 관여가 불가피 할 것임.

(9) 현제도 발주자의 갑질로 점검 횟수가 늘어나 안전점검기관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이 심화 될 수 있음.

예1) 고속도로공사의 교량 안전점검은 국토부 지침(별표1)대로라면 교량당 3차에 걸쳐 실시하여야 하나 교각이 20개인 교량을 $20 \times 3 = 60$ 회에 걸쳐 점검을 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부실벌점을 주겠다고 함.

예2) 시행령 제 98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공사를 점검대상으로 무리하게 확대해석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하는 행위

- 향타 및 향발기 항목에 따라 모든 향타 공사에 지침에도 없는 점검을 안전점검자가 입회하도록 강요

(10) 위 조항 개정 전에 「건진법」 실적(안전점검, 초기점검 실적)이 객관적으로 관리된 후 법적용이 시행되어야 하나 현재 「건진법」 관련 용역실적은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않음.

(11) 건설공사 안전점검 실적이 아닌 건설공사사업관리, 유사용역에 대한 것을 안전점검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음.

2. 대책

(1) 현재 「건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는 구체적 업체지정 방법이 시행규칙에 위임되어있기 때문에 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하여 시행령 제 100조의 2⑤(~~수행기관의 모집공고 지정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에 따른 시행규칙 고시일로부터 1년 경과되는 이후 발주된 공사부터 적용한다는 것으로 고시해 주어야 할 것임.

지금까지 수행한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의 실적관리를 해당 기관인 발주자, 시공사, 한국건설기술인협회(기술자) 확인을 하여 정비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단, 시공사 확인만으로 실적을 인정해 줄 경우 기간이 앞당겨 질 수 있음)

(2)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을 20년 이상 수행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많으므로 「시설물 안전법」상의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수행실적과 건설공사 사업관리 실적과 유사용역 실적은 제외되어야 함.

(3) 발주자가 법과 지침에 따른 과업내용을 확대하거나 업체지정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명문화 해야함.

(4) 안전점검 대가기준을 지키지 않고 발주자나 시공사에 대한 처벌이 선행되어야 함.

(5) 건설공사 안전점검용역의 실적관리를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에 위임.